

##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제정 1996. 3. 1 규칙 제 65호  
개정 2005. 10. 5 규칙 제424호(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)  
2006. 12. 29 규칙 제524호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5. 9. 15 규칙 제801호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9. 8. 7 규칙 제976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2조(점용허가의 신청 등) ①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붙여 점용허가신청서를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2. 29, 2015. 9. 15>

② 삭제 <2006. 12. 29>

제3조(점용허가 등) ① 시장은 제2조의 신청서가 허가기준에 위배됨이 없을 때에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 12. 29, 2015. 9. 15>

② 삭제 <2006. 12. 29>

제4조(기재사항 변경)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9. 15, 2019. 8. 7>

1. 수허가자의 주소 변경 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명
2.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

### 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5. 10. 5 규칙 제424호,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06. 12. 29 규칙 제52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9. 15 규칙 제80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8. 7 규칙 제97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15. 9. 15>